

# 파주운정3지구 A42블록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입주자모집공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신영지웰 운정신도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uj.g-well.co.kr/>)으로 동시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및 비닐장갑 미착용,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주택전시관 안내 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관람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에 적용되어 제작·배포된 시행사 및 시공사의 각종 로고 및 BI, CI 등의 이미지 디자인은 사업주체가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 및 사업주체 고객센터(031-941-6002)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5.)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2021.02.25. 이전)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5.)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8.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파주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남·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uj.g-wel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

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체결
일 정	2022.03.10.(목)	2022.03.11.(금)	2022.03.14.(월)	2022.03.18.(금)	2022.03.19.(토) ~ 2022.03.27.(일)	2022.03.30.(수) ~ 2022.04.05.(화)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 청약신청자격서류(10:00~16:00) - 정당계약(특별/일반공급)(10:00~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바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전 제출하는 서류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야 합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최초계약자의 공급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주체와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매수자(전매자)와의 계약도 취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

약자(전매자 포함)는 어떠한 사유(선의의 피해 등)로도 사업주체나 해당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이상에 해당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무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 7616호(2022.02.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A42블록

■ 대지면적 : 40,479.00㎡(기부채납 면적 215.20㎡포함, 대지면적은 추후 대지정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7개동 총 606세대 중 일반공급 362세대

[특별공급 244세대(일반[기관추천] 33세대, 다자녀가구 61세대, 신혼부부 66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6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071	01	084.9908A	84A	84.9908	23.9595	108.9503	50.8130	159.7633	59.2935	332	33	33	66	10	66	208	124	17
		02	100.9448A	100A	100.9448	29.0305	129.9753	60.3513	190.3266	70.4237	99	-	10	-	3	-	13	86	5
		03	100.9819B	100B	100.9819	28.6017	129.5836	60.3735	189.9571	70.4496	175	-	18	-	5	-	23	152	9
합 계											606	33	61	66	18	66	244	362	31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동호 라인별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0%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계약시	30일 이내	2022-10-14	2023-05-15	2023-12-14	2024-04-15	2024-07-15	입주지정시		
084.9908A [84A]	401동(1호,2호,3호), 405동(5호)	1층	4	191,967,660	218,032,340	-	410,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2층	4	197,586,226	224,413,774	-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3층	4	201,331,936	228,668,064	-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4층	4	204,609,433	232,390,567	-	437,0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131,100,000
		5~10층	24	206,482,288	234,517,712	-	441,0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11~15층	20	208,823,357	237,176,643	-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6~20층	20	210,696,212	239,303,788	-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주택형	동호 라인별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0%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30%		
								계약시	30일 이내	2022-10-14	2023-05-15	2023-12-14	2024-04-15	2024-07-15	입주지정시		
084.9908A [84A]	402동(1호), 403동(5호), 404동(3호), 405동(3호, 4호)	1층	3	192,904,088	219,095,912	-	412,0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2층	5	198,522,653	225,477,347	-	424,0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3층	5	202,268,364	229,731,636	-	432,0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4층	5	205,545,860	233,454,140	-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5~10층	30	207,418,716	235,581,284	-	443,0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11~15층	25	209,759,785	238,240,215	-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16~20층	25	211,632,640	240,367,360	-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402동(2호, 3호), 403동(3호, 4호), 404동(4호, 5호), 407동(1호, 2호)-1~10층	1층	6	193,840,515	220,159,485	-	414,0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2층	8	199,459,081	226,540,919	-	426,0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3층	8	203,204,791	230,795,209	-	434,0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4층	8	206,482,288	234,517,712	-	441,0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5~10층	48	208,355,143	236,644,857	-	445,0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11~15층	30	210,696,212	239,303,788	-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407동(1호,2호)-11~18층	16~20층	30	212,569,067	241,430,933	-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11~15층	10	212,100,854	240,899,146	-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16~18층	6	213,973,709	243,026,291	-	457,0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100.9448A [100A]		401동(5호)-2~10층, 402동(5호)-1~10층, 403동(1호), 404동(1호), 405동(1호)	1층	4	217,840,321	247,417,890	24,741,789	490,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2층		5	223,619,756	253,982,040	25,398,204	503,0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50,900,000
	3층		5	228,065,471	259,031,390	25,903,139	513,0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4층		5	231,622,054	263,070,860	26,307,086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5~10층		30	233,844,917	265,595,530	26,559,553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11~15층		15	236,512,346	268,625,140	26,862,514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16~20층	15	238,735,209	271,149,810	27,114,981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401동(5호)-11~20층, 402동(5호)-11~20층	11~15층	10	238,735,209	271,149,810	27,114,981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16~20층	10	240,958,061	273,674,490	27,367,449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100.9819B [100B]	406동(1호, 2호)	1층	2	216,062,024	245,398,160	24,539,816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2층	2	221,841,470	251,962,300	25,196,230	499,0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49,700,000	
		3층	2	226,287,185	257,011,650	25,701,165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4층	2	229,843,768	261,051,120	26,105,112	517,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5~10층	12	232,066,620	263,575,800	26,357,580	522,0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56,600,000
		11~15층	10	234,734,060	266,605,400	26,660,540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16~20층	10	236,956,912	269,130,080	26,913,008	533,0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406동(3호), 406동(4호)-3~10층	1층	1	216,951,178	246,408,020	24,640,802	488,0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46,400,000
		2층	1	222,730,613	252,972,170	25,297,217	501,0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3층	2	227,176,328	258,021,520	25,802,152	511,0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53,300,000
		4층	2	230,732,911	262,060,990	26,206,099	519,0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5~10층	12	232,955,763	264,585,670	26,458,567	524,0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11~15층	5	235,623,203	267,615,270	26,761,527	530,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59,000,000
	16~20층	5	237,846,066	270,139,940	27,013,994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401동(4호)-2~10층, 402동(4호)-1~10층, 403동(2호), 404동(2호), 405동(2호)	1층	4	217,840,321	247,417,890	24,741,789	490,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2층	5	223,619,756	253,982,040	25,398,204	503,0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50,900,000
		3층	5	228,065,471	259,031,390	25,903,139	513,0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4층	5	231,622,054	263,070,860	26,307,086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5~10층	30	233,844,917	265,595,530	26,559,553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11~15층	15	236,512,346	268,625,140	26,862,514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16~20층		15	238,735,209	271,149,810	27,114,981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주택형	동호 라인별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
								10%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30일 이내	2022-10-14	2023-05-15	2023-12-14	2024-04-15	2024-07-15	입주지정시
100,9819B [100B]	401동(4호)-11~20층, 402동(4호)-11~18층	11~15층	10	238,735,209	271,149,810	27,114,981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16~20층	8	240,958,061	273,674,490	27,367,449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406동(4호)-11~20층	11~15층	5	236,956,912	269,130,080	26,913,008	533,0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16~20층	5	239,179,775	271,654,750	27,165,475	538,0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 ※ 본 아파트의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의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파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중문, 가전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장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납부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2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3호에 의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안내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점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의거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100A	100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청	7	-	-	7
		서울시청	4	-	-	4
		인천시청	3	-	-	3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3	-	-	3
		장기복무제대군인	3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5	-	-	5
	중소기업근로자		5	-	-	5
북한이탈주민		3	-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7	5	9	31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50%)		16	5	9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66	-	-	6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	3	5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66	-	-	66	
<b>합 계</b>		<b>208</b>	<b>13</b>	<b>23</b>	<b>244</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의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파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중문, 가전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납부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2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3호에 의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안내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의거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b>1인만 신청가능</b>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파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 수도권 물량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 미적용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천으로 선정된 자
- 추천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주 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고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50% 순으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 (60㎡ 이하만 가능)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60%이하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1.11.16.)] [별표 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 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인영 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75%) 및 추천제 (25%)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50%)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 초과 : 가정제 (30%) 적용 및 추천제 (70%) 적용, 가정제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3.10(목)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신영지웰 운정신도시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2.03.11(금)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ul>
	2순위	2022.03.14(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원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주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5.)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8.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10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75%,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100%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5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3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0~50%까지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거주신청자가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03.18.(금)</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03.30.(수)~2022.04.05.(화) (10:00~16:00)</li> </ul> </li> <li>•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계약 체결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및 당사 홈페이지(http://uj.g-well.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3.18 (금) ~ 2022.03.27 (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3.18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아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무효로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분양대금 납부 지정계좌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입금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3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기 납부한 계약금, 약정납부일 이전 선납할인 적용받은 중도금 및 잔금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대금에 관하여, 사업주체에게 반환 요청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4-264617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상기 계좌는 향후 중도금대출 은행이 우리은행 외 타 은행으로 선정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계약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계약자)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	주택전시관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여야 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조건

-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 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주민등록법령 위반(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최초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가산세를 포함하며,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본 주택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이때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에 준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선정된 은행 외에는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20%) 완납 이후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고, 금융기관도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및 금융권 사정, 법률의 변경 등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가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분양금 납부계좌에 현금(계좌이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일 전일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계약자는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금액을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별도의 승계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 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타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금융대출(혹은 기타 이와 유사한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금융비용(중도금 대출이자 및 제반비용등)은 계약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외국인, 재외동포, 미성년자 또는 법인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출관련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구분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22.03.19.(토) ~ 2022.03.27.(일) 10:00~16: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li> <li>-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건본주택</li> <li>(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li> </ul>
일반공급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주택전시관 비치,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발급)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발급)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또는 자녀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발급)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주택전시관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또는 자녀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소명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 사실 소명 서류	자녀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제출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주택공급신청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해당자	주택전시관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분이 동일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계약체결 전 청약자격 검증 서류 제출일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 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② 등기소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i> <li>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li> <li>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li> <li>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li> </ol>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 옵션 계약

■ 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본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 세탁실 바닥방수, 발코니 우수 선홈통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벽체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팬트리, 붙박이장, 수납선반 및 가구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천정	천정지(초배지 포함), 등박스, 반자동림(몰딩), 우물천정, 발코니천정도장, 전동빨래건조대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시설물 마감(스프링클러, 감지기, 환기용 디퓨저 등)
조명기구	부착/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등포함), 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기구(욕실제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수전류, 액세서리일체, 천정재(천정틀 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 배기팬, 욕실 바닥 및 벽타일, 욕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렌지후드, 절수기일체형 싱크수전 등)	설비배관
문	목재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외 하드웨어 일체 등)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기타	발코니 수전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주택형)	84A	100A	100B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	31,250,000	36,180,000	36,820,000

※ 전용 85㎡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호를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 소화기 등)을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주택형)	84A	100A	100B
발코니 확장 공사비	9,998,000	11,561,000	9,335,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확장면적 및 확장 시 제공되는 가구 등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세한 확장 부위 및 방위치 등은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별 확장면적 및 확장 시 제공되는 가구 등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504-274283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수납계좌와 상이 하오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계좌로 납부한 금액만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인정하오니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공사비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전시관 제출 납부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서 계약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 부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일정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감안하여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타입별로 마감적용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미확장일 경우 결로방지를 위해서 해당세대 천정 속에 단열재가 시공되며, 단열 두께에 따른 발코니 부분의 천정층고가 낮아질수 있으며, 거실등박스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동 조합의 형태에 따른 인접 세대 간의 벽체 및 단열재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동일 유형세대에도 발코니의 유효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유상옵션 계약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의 계약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가대상이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유상옵션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유상옵션과 관련하여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도산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금액은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하며, 설치 위치는 계약자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사업주체 분양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오니 필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표기(거실, 침실1, 침실2 등)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 에어컨(천정형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40% (2023.12.14)	잔금50% (입주시)	제조사	비고
84A	선택 1	거실 + 침실1	3,600,000	360,000	1,440,000	1,800,000	LG전자	계약일정 별도 공지 예정
	선택 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000,000	600,000	2,400,000	3,000,000		
100A	선택 1	거실 + 침실1 + 주방	4,600,000	460,000	1,840,000	2,300,000		
	선택 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7,000,000	700,000	2,800,000	3,500,000		
100B	선택 1	거실 + 침실1 + 주방	4,600,000	460,000	1,840,000	2,300,000		
	선택 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7,000,000	700,000	2,800,000	3,500,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개소)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내기의 위치는 입주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일부 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천정에 설치되는 마감재의 위치는 일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가전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안	제조사	상품명(모델명)	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 시)
전평형	하이브리드 쿡탑	삼성전자	NZ63T5601AK	900,000	90,000	810,000
전평형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삼성전자	RQ22K5L01EC	1,980,000	198,000	1,782,000
전평형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T7065SS	1,260,000	126,000	1,134,000
전평형	전기오븐	삼성전자	HSB-N361B	340,000	34,000	306,000

- 하이브리드 쿡탑 유상옵션 선택시 가스쿡탑(하츠:SSGC-3605SABH)이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키큰장이 추가설치되는 상품이오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옵션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 시)
전평형	현관중문 (슬라이딩)	1,320,000	132,000	1,188,000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주방상판/벽면 마감 및 주방가구 디자인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옵션금액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40% (2023.12.14)	잔금 50% (입주 시)
주방 상판/벽면 마감	84A	엔지니어스톤 상판/벽면 마감	2,580,000	258,000	1,032,000	1,290,000
		텍톤 상판/벽면 마감	5,970,000	597,000	2,388,000	2,985,000
	100A	엔지니어스톤 상판/벽면 마감	2,880,000	288,000	1,152,000	1,440,000
		텍톤 상판/벽면 마감	7,176,000	717,600	2,870,400	3,588,000
	100B	엔지니어스톤 상판/벽면 마감	3,720,000	372,000	1,488,000	1,860,000
		텍톤 상판/벽면 마감	8,460,000	846,000	3,384,000	4,230,000
주방가구 디자인 특화	84A	미니바(주방디자인 특화)	2,100,000	210,000	840,000	1,050,000
	100A	미니바(주방디자인 특화)	2,430,000	243,000	972,000	1,215,000
	100B	아일랜드연장 및 장식장(주방디자인 특화)	3,730,000	373,000	1,492,000	1,865,000

- 주방상판/벽면마감 옵션 선택시 기본공사(상판:인조대리석 / 벽면:타일)에서 선택옵션 마감재로 변경 설치됩니다.
- 주방상판/벽면마감 옵션가격은 기본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방가구 디자인 특화 옵션에는 주방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과 수전 변경이 포함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클린케어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옵션금액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40% (2023.12.14)	잔금 50% (입주 시)	비고
84A		손빨래싱크 하부장 + 수납장	1,600,000	160,000	640,000	800,000	
100A	옵션1	복도팬트리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도어	1,000,000	100,000	400,000	500,000	옵션 택1
	옵션2	클린케어룸 특화	3,900,000	390,000	1,560,000	1,950,000	
100B	옵션1	복도팬트리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도어	1,200,000	120,000	480,000	600,000	옵션 택1
	옵션2	클린케어룸 특화	5,400,000	540,000	2,160,000	2,700,000	

- 클린케어룸 옵션 선택시 손빨래수전이 삭제되며, 바닥마감의 레벨 및 자재(타일)가 변경되오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클린케어룸 옵션가격은 기본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조명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옵션금액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40% (2023.12.14)	잔금 50% (입주 시)
84A	주방/거실 조명 특화	2,500,000	250,000	1,000,000	1,250,000
100A	주방/거실 조명 특화	2,600,000	260,000	1,040,000	1,300,000
100B	주방/거실 조명 특화	2,550,000	255,000	1,020,000	1,275,000

- 조명특화 옵션 미선택시 우물천정과 거실 아트월 상단의 등박스가 없이 몰딩으로 마감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거실우물천정 간접조명, 아트월 상단조명, 거실등, 주방등이 추가설치 및 변경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가구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옵션금액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40% (2023.12.14)	잔금 50% (입주 시)
침실2	84A	불박이장	1,160,000	116,000	464,000	580,000
침실2, 3	100A, B	드레스룸 2개소	3,120,000	312,000	1,248,000	1,560,000
침실1	전평형	드레스룸	1,980,000	198,000	792,000	990,000
		파우더장	2,640,000	264,000	1,056,000	1,320,000
거실	100A, B	거실 장식장 특화	3,216,000	321,600	1,286,400	1,608,000

- 100A, B 타입의 침실2, 3 드레스룸 2개소 옵션 선택시 시스템가구와 가구도어가 설치되오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1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시스템가구와 슬라이딩도어가 시공되오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장식장 특화옵션(100A, 100B)를 선택할 경우 거실과 침실2 사이에 장식장이 시공됨에 따라 벽체위치가 변경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유상옵션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 옵션(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04-281586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 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일반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변경(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광역도로 및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파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최초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을”은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내 주동의 번호는 '운정신도시(3지구) 공동주택 측벽지침 지정 및 동번호 부여[통일기반조성과-4696(2020.06.02.)호]에 따라 401동부터 시작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하여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준공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공동주택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설계 및 시공관련 변경사항

- 본 공동주택은 구조/성능/마감/상품/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난간,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로고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및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최종 사용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구조물(옹벽, 조경석 등)이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의 유형은 바뀌지 않으나,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경미하게 변경(디자인, 색상, 높이 등)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및 식재의 위치는 단지의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현장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는 이사 시 차량 접근 동선, 주동의 위치 및 단위세대 창호크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 및 중량물의 운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단지 내 단위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재료, 입면, 벽체마감 등) 및 외부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는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과정, 허가권자 경관자문결과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주택전시관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욕실,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구조개선등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에서는 접근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막다른 도로 형태로 회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이므로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주택전시관(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장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기구의 수량 및 배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질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거나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공사시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의 내용 및 사양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임)
- 스프링클러는 주택전시관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단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 포함 품목만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 및 집기류(테이블, 의자, 인테리어소품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용으로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시설물/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미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주택전시관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 발코니 등에는 상층에서 내려오는 우수수 배관이 본공사시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포트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주택전시관 피난을 위한 동선입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 ■ 명칭

- 단지 및 단지내 명칭, 외벽로고사인,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 외부시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의 위치 및 사양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시설물의 경우 주택전시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 상에 표현된 것은 참고 이미지이며, 허가권자의 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환풍, 제연환풍 등의 급배기구),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 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생활폐기물보관소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자의 개인 및 단체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상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준공) 전후 소음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단지 북측과 동측 경계부 일부(특히 단지 북서측, 북동측 교차로 인근)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및 문주, 그 밖의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경우 시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지하주차장의 단지 내 입구 위치에 따라 일부 동/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도로 인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에서 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주택전시관의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시설(환풍, D.A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인접 주동/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 총 8개소(공동주택 6개, 근린생활시설 2개) 및 쓰레기집적소(재활용집적소) 1개소로 인접한 동/세대에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에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의 면적은 세대수를 고려하여 배치하였지만, 미관 및 악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보관소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장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세대는 단지 출입구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출입구, 차량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인접한 동/세대는 소음 및 분진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 401동, 402동 / 부대복리시설 : 402동, 403동 / 펌프실, 저수조 : 404동 하부 / 주차장 램프 : 401동, 402동, 403동 / 어린이집, 경로당 : 401동, 402동, 406동, 407동 / 어린이놀이터 : 403동, 404동, 405동, 406동, 407동 / 기타시설은 배치도 참고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주택전시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단지내 보안 및 보행자/차량 안전을 위해 보안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제기 및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동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욕실2 등)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에는 본 시공시 1면에 손끼임방지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 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관람을 통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 색상 및 패턴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우·오수 드레인 및 선홍통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 수전,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설치 개소와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분양면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발코니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면적은 확장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타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의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냄새 및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 시공자재와 상이할 수 있음)
- 창호 등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앞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의 형태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정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역난방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별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 외관)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욕실가구, 거울 후면 등에는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내부마감 석재 시공부위는 원자재 특성에 따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식탁위치에 정하였으며, 계약자 요구로 인한 위치이동은 불가합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두께차이로 인해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01동, 402동, 403동, 404동, 405동, 406동 일부 세대의 경우 지상층에서 주동 출입방식은 필로티형으로 설치되오니, 주택전시관 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의 높이는 동별로 상이하오니 주택전시관 내 모형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동 지하1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 및 악취, 진동이 발생할수 있으며, 급배기 그릴창은 1층외부에 설치되거나 필로티 내에 설치될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에 입주민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는 필로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등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측벽이 외기에 면하거나 같은 주동 내에서 층수가 차이나는 경우 외기에 면한 세대는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인접세대는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App을 통해 구현되므로,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인터넷 별도가입 필요)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합니다.
- 저층세대의 외부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정,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붙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정/후면/측면 마감재 미 시공 등)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설치 간격, 구조체 및 하드웨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호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수전 과 각종시설물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조명기구,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정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 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와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외부 창호의 개소, 위치, 사양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주방발코니와 옵션선택에 따른 발코니 공간에는 외벽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으나 계절에 따른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실과 발코니는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욕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가 설치되며, 최상층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과 인접한 발코니의 경우 창호 유무에 따라 환기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보조주방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등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 환기유닛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상층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측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가 부착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효 천정고, 유효실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향후 본 시공시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창호는 계약 미포함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실(하향식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저층부(2층 이하) 및 필로티 내부공간은 석재, 석재뿔칠, 수성페인트 등을 혼용하여 시공하며, 고층부는 수성페인트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 천정 설치로 유효 천정고가 주택전시관보다 낮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406동 100B의 일부 세대는 다용도실 혹은 드레스룸의 창호 사이즈가 0.5㎡미만 창호로 설치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시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센터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 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임의의 공간에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 벽체 및 바닥은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 내부 마감재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층 pit공간 별도의 건축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944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53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공동주택 주차장과 별도의 시설로 구획되어있으며, 공동주택 계약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계획된 지하1층 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 연결동선은 추후 본 시공시 단지 보완 강화 또는 관리주체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16대(공부상 지하로 표기됨)는 근린생활시설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실내 및 실외, 지붕 등에 설치)로 인해 인접 동/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용 실외기실 공간에는 실외기 설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동/세대의 경우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이외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각 동간의 거리에 따라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주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등 단지내 공용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인택배함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거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야간조명으로 인한 세대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2.7m, 주차공간 천정고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에서 각 주동 코어로 출입시 단차가 발생하여 경사로가 설치되며, 본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 경비실, 통합형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서 주동 출입방식은 필로티형, 동출입구형, 필로티+동출입구혼합형으로 설치되며, 각 동별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두께 조정 등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의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소유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시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고 세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계전기 설비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침실1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1에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붕층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은 중앙배기 방식으로 욕상에 무동력 팬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용 안테나(중계장치)는 401/402/404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404동 하부(지하층)에 기계실 및 저수조, 403동 하부(지하층)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 파주운정3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관련 사항

- 파주운정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대별 소수점 이하 대지지분 변경에 대해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시설용지)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서, 카탈로그, 단지모형 상의 외부도로,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시의 파주운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되었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있을 경우 단지 내,외부도로, 진입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파주운정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택지개발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파주운정지구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조성공사 및 건축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주운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파주운정 3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분양 시와 달리 준공 후 도로여건이 변하여 교통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변 도로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준공) 전후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단지 경계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 위치 및 사양, 형태, 높이, 구조, 버드세이버 적용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6년 예정)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 및 해당개발계획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운정3지구 내 남동측(동패IC방향)의 우수중계펌프장,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등과 운정3지구 밖 남동측의 송전탑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 전자파 등)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배정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가칭)운정7초등학교(파주시 동패동 925-3 일원)이나 개교 전까지는 인근 기존 초등학교로 임시배치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교하운정중학교(교하중학교, 두일중학교, 심학중학교)으로 설정하여 배정하며, 고등학교 학교군의 경우 파주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써 시단위의 비교적 넓은 지역으로 배치합니다. 단,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설정은 매해의 전년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 및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지망을 기초로 한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하며, 매해의 전년도 수립하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계획 및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칭)운정7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정3택지개발지구 내 설립계획 중인 학교(유치원)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학교(유치원) 설립계획은 투자심사 승인 여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 상황, 인근 공동주택 분양공고율, 실입주 상황, 학교 신설 교부금 예산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급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개발사업시행자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입주예정시기 및 학교설립 추진시기 조정 협의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민의 초·중학교 배정은 학교 설립이 확정될 시 배정될 계획이며, 향후 해당 관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교시기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교시기까지 학군내 원거리 학교로 임시 분산배치 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파주시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지연·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추후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각 동의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청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현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웰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웰 홈페이지 - My Gwell - 예약신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 대한 제반 통보(계약의 해제통고, 계약의 변동사항 통고의무 등을 포함)는 중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폐문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포함)도 이와 같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본 공사시 각 동 옥상에는 통신장비(TV공청 안테나, FM, 디지털 안테나, 위성안테나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및 피뢰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바람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차량도로와 인접한 주동에는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남측 근생과 인접한 주동(401, 402동)에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주변도로와 레벨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보행출입구는 계단, 경사로 등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계약전 단지 보행출입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일절 책임이 없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계획으로 인해 세대내 음영이 생길 수 있으며, 벌레 및 곤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해 단지내 교차로에는 반사경 등이 부착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연대보증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사업주체, 시공회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신영	신영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14층 140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에이동 257-1호
법인등록번호	110111-0618178	110111-0101909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거 감리자 및 감리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경진건축	한얼엔지니어링	하나종합테크
감리금액	2,127,488,000	479,673,000	586,850,000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중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자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출입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주민운동시설(실외운동시설, 피트니스1),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17호에 의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2-101-0001900 호	204,241,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공동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약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 성능 / 설치위치 /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 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 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 용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설계용 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 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 용	전동기, 펌프 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 용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 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 용	고효율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 용	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따름
	조명설치(다목)	적 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 용	세대 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 용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 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시) &lt;개정 2017.1.20&gt;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b>건축물 개요</b></p> <p>건축물명 : 파주운정3지구 A4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4.06.30          주소 : 파주운정3 A42BL          층 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108140.43(㎡)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범도시건축사사무소</p>	<p><b>인증 개요</b></p> <p>인증번호 : 21-주-에-11-0394          평가자 : 이동영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p>																																			
<p><b>인증 등급</b></p> <p>인증등급 : 1+등급</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b></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sup>2</sup>·년)</th> <th>요구량</th> <th>1차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 <th>배출량</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td> <td>0</td> <td>80.5</td> <td>1+</td> <td>48</td> <td>20.7</td> </tr>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	0	80.5	1+	48	20.7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	0	80.5	1+	48	20.7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p><b>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sup>2</sup>·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 <th>1차 에너지소요량(kWh/m<sup>2</sup>·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 </tr> </thead> <tbody>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40.8</td> <td>51.8</td> <td>39.7</td> <td>8.8</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7.4</td> <td>27.5</td> <td>6.2</td> </tr> <tr> <td>조명</td> <td>9.0</td> <td>8.6</td> <td>23.7</td> <td>4.0</td> </tr> <tr> <td>환기</td> <td></td> <td>3.7</td> <td>10.2</td> <td>1.7</td> </tr> <tr> <td>합계</td> <td>80.5</td> <td>101.5</td> <td>101.1</td> <td>20.7</td> </tr> </tbody>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간혹은 냉방설비기[ ] 설치된 [ V ]설치되지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한국부동산원          2021년 11월 11일</p>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0.8	51.8	39.7	8.8	급탕	30.7	37.4	27.5	6.2	조명	9.0	8.6	23.7	4.0	환기		3.7	10.2	1.7	합계	80.5	101.5	101.1	20.7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0.8	51.8	39.7	8.8																																
급탕	30.7	37.4	27.5	6.2																																
조명	9.0	8.6	23.7	4.0																																
환기		3.7	10.2	1.7																																
합계	80.5	101.5	101.1	20.7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b>건축물 개요</b></p> <p>건축물명 : 파주운정3지구 A42BL 공동주택          건축주 : (주)신영          준공(예정)일 : 2024.06.30          주소 : 경기도 파주운정3지구 A42BL          층 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108,571.63㎡ (평가 연면적: 105,154.2㎡)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p>	<p><b>인증 개요</b></p> <p>인증번호 : 2022-02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01.1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सन</p>
<p><b>인증 등급</b></p> <p>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도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 2019-248호, 민중기존 문명채취(2020.04.30))</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p>종합등급 ★☆☆☆</p> <p>2022년 01월 19일</p> <p>한국부동산원</p> <p>*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p><b>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 파주운정3지구 A42BL 공동주택          2. 신청자 : (주)신영          3. 내지 위치 : 경기도 파주운정3지구 A42BL          4. 성능등급 : 가, 소용 관련 등급</p>																																									
<p><b>가, 소용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 생활주거를 위한 생활</td> <td>★★★★</td> </tr> <tr> <td>2. 중앙주거를 위한 생활</td> <td>★★★</td> </tr> <tr> <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td> <td>★★</td> </tr> <tr> <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td> <td>★★</td> </tr> <tr> <td>5. 화상실 급배수 소용</td> <td>★★★</td> </tr> </tbody> </table>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주거를 위한 생활	★★★★	2. 중앙주거를 위한 생활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5. 화상실 급배수 소용	★★★	<p><b>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b></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7. 인체위험 화학물질</td> <td>-</td> </tr> <tr> <td>18. 자연지반 녹지율</td> <td>★★</td> </tr> <tr> <td>19. 생활민원</td> <td>★★</td> </tr> <tr> <td>20. 비오류 조성</td> <td>★★</td> </tr> <tr> <td>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td> <td>★★★★</td> </tr> <tr> <td>22. 자연 환기 성능 확보</td> <td>-</td> </tr> <tr> <td>23. 단위세대 환기 성능 확보</td> <td>★★★★</td> </tr> <tr> <td>24. 차등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td> <td>★★</td> </tr> </tbody> </table>	성능항목	성능등급	17. 인체위험 화학물질	-	18. 자연지반 녹지율	★★	19. 생활민원	★★	20. 비오류 조성	★★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2. 자연 환기 성능 확보	-	23. 단위세대 환기 성능 확보	★★★★	24. 차등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주거를 위한 생활	★★★★																																								
2. 중앙주거를 위한 생활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5. 화상실 급배수 소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7. 인체위험 화학물질	-																																								
18. 자연지반 녹지율	★★																																								
19. 생활민원	★★																																								
20. 비오류 조성	★★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2. 자연 환기 성능 확보	-																																								
23. 단위세대 환기 성능 확보	★★★★																																								
24. 차등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p><b>나, 구조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가연성</td> <td>★★</td> </tr> <tr> <td>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td> <td>★</td> </tr> <tr> <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 <td>★★</td> </tr> </tbody> </table>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p><b>다, 생활 환경 등급</b></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 <td>★★★</td> </tr> <tr> <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 <td>-</td> </tr> <tr> <td>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td> <td>★★</td> </tr> <tr> <td>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td> <td>★</td> </tr> <tr> <td>5. 건물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 <td>★★★★</td> </tr> <tr> <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td> <td>★★★★</td> </tr> <tr> <td>7. 차등 온도조절장치 적용</td> <td>★★★★</td> </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td> <td>★★</td> </tr> <tr> <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0. 공용공간내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 <td>★★★★</td> </tr> <tr> <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 <td>★</td> </tr> <tr> <td>13. 화재안전관리 종합시스템</td> <td>★★★★</td> </tr> <tr> <td>14. 방범안전 콘셉트</td> <td>★★</td> </tr> </tbody> </table>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	★	5. 건물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차등 온도조절장치 적용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내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화재안전관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셉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	★																																								
5. 건물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차등 온도조절장치 적용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내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화재안전관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셉트	★★																																								
<p><b>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 감지 및 경보설비</td> <td>★</td> </tr> <tr> <td>2. 계연설비</td> <td>★</td> </tr> <tr> <td>3. 내화성능</td> <td>★</td> </tr> <tr> <td>4. 수평피난거리</td> <td>★★★★</td> </tr> <tr> <td>18. 질서유지 기기 사용</td> <td>★★</td> </tr> <tr> <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 <td>★★</td> </tr> </tbody> </table>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18. 질서유지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01월 19일</p> <p>한국부동산원</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18. 질서유지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비고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은 기밀성능 2등급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펌프, 전동기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세대내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 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설치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5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제15조제1항 관련)에 의거한 항목별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대항목		세분류	금액	대항목		세분류	금액		
1.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83,040,354,372원	2. 건축비(58)	공사비(51)	유리공사	998,826,825원		
		기간이자	1,124,291,086원			건축(23)	타일공사	3,932,278,433원	
		필요적 경비	4,438,762,546원				돌공사	2,618,589,753원	
		그 밖의 비용	12,988,016,008원				도장공사	1,137,944,227원	
2. 건축비(58)	토목(13)	토공사	2,535,890,874원				도배공사	1,353,230,955원	
		흙막이공사	0원				수장공사	2,205,590,675원	
		비탈면보호공사	0원				주방용구공사	3,180,971,581원	
		옹벽공사	0원				잡공사	3,655,481,113원	
		석축공사	0원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2,969,941,733원
		우·오수공사	253,545,572원					급탕설비공사	2,821,444,737원
		공동구공사	0원			오배수설비공사		1,187,976,665원	
		지하저수조및 급수공사	0원			위생기구설비공사		1,930,462,203원	
		도로포장공사	272,069,496원			난방설비공사		1,187,976,665원	
		교통 안전시설물 공사	0원			가스설비공사		296,994,131원	
		정화조시설공사	0원			자동제어설비공사		445,491,267원	
		조경공사	1,267,169,027원			특수설비공사		593,988,263원	
		부대시설공사	0원			공조설비공사		0원	
	건축(23)	공통가설공사	1,824,884,738원			그 밖의 공종(4)	전기설비공사	5,755,564,108원	
		가시설물공사	1,795,447,485원				정보통신공사	3,948,930,283원	
		지정 및 기초공사	2,293,572,732원				소방설비공사	7,228,286,209원	
		철골공사	0원				승강기공사	1,237,434,527원	
		철근콘크리트공사	33,334,187,656원			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5,869,044,504원	
		용접공사	0원				이윤	4,747,610,378원	
		조적공사	1,977,123,236원	간접비(6)	설계비		865,543,500원		
미장공사		6,502,538,584원	감리비		3,222,061,000원				
단열공사		1,098,401,813원	일반분양시설경비		7,197,000,000원				
방수·방습공사		2,214,380,509원	분담금 및 부담금		0원				
목공사		3,826,831,762원	보상비		0원				
가구공사		11,063,102,823원	기타사업비성 경비		16,409,146,000원				
금속공사		764,487,564원	그 밖의 비용 (1)		26,196,092,082원				
지붕 및 흙통공사		777,668,415원	합 계		291,774,000,000원				
창호공사		5,187,371,885원							

항 목		금 액	산출 근거
택지가산비	기간이자	1,124,291,086원	인정
	제세공과금	4,438,762,546원	인정
	말뚝박기 공사비	9,876,326,063원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1,769,780,484원	조정
	간선시설 설치비용	468,302,721원	조정
	지역난방 부담금	873,606,740원	인정
	합 계	18,551,069,640원	
건축가산비	공동주택성능등급	3,884,065,218원	인정
	구조형식-벽식혼합 무량판구조	3,884,065,218원	인정
	법정초과복리	1,595,738,619원	인정
	사업승인조건	1,845,940,216원	조정
	인텔리전트설비	10,706,770,560원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662,773,614원	조정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상향비용	708,676,290원	조정
	법정개정비용	96,492,000원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1,002,001,990원	조정
	합 계	26,386,523,725원	

- 사이버 주택전시관 : <http://uj.g-well.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
- 분양문의 : 031)941-6002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